

제 2회 OECD 소득분배지표 제공자 회의 참석결과 보고

2nd Meeting of Providers of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

(복지통계과/16.5.19)

1. 회의개요

- 회의명: 제2회 OECD 소득분배지표 제공자 회의
- 기간: 2016. 2. 18(목) ~ 2. 19(금)
- 장소: 프랑스 파리 OECD
- 국가별 참가현황 : 20개국, 4개 기관, 60여명 참가
 -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9), 독일(3), 헝가리(2), 아일랜드(2), 이스라엘, 일본(4),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2), 영국, 라트비아공화국
 - EUROSTAT, LIS(3), 파리대학, OECD(18)
- 회의목적
 - OECD의 소득불평등과 빈곤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 및 가이드라인 논의
 - 각국에서 제공한 소득분배지표 데이터의 국가간 비교가능성과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
 - 소득분배지표 자료 제공자와의 협력 강화

2. 1차 회의 현황

- 회의일시 : 2013년 2월(한국 불참)
- 참가현황 : 26개 회원국 및 Eurostat, LIS 등 참석
- 주요의제
 - 소득분배지표 데이터베이스(IDD) 수집절차 등 설명
 - 소득 정의와 비교(캐버라 2011, SNA 등)
 - 자료처리(마이너스 소득, 표준오차 계산 등)
 - 소득개념 확장(의제주거소득, 사회적 현물이전 등)

3. 2차 회의 주요의제

- 주요의제

<데이터 관련 이슈>

- 2.1 비교가능성 문제에 대한 최근 사례-캐나다를 중심으로
- 2.2 IDD 데이터 이슈 : 사후 비교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 2.3 소득정의 변경('13.10.)에 따라 발생한 이슈 3가지(wave6 ⇒ wave7)

<시의성>

- 3.1 소득분배와 빈곤의 적절한 생산 시기
 - Nowcasting household income in the UK(영국)
 - Nowcasting the poverty rate by microsimulation(프랑스)
 - Nowcasting the household income distribution(OECD)

<방법론적인 이슈>

- 4.1 가구조사에서 의제주거소득과 사회적현물이전(STIK)의 측정현황
- 4.2 EU 국가의 소득분배에서 사회적현물이전(STIK) 영향(EUROSTAT)
- 4.3 가구조사자료와 국민계정자료의 결합
 - Distributional National Accounts DINA(옥스포드대학, 파리경제대학)
 - Work Of OECD EG On Disparities In National Accounts(OECD)
- 4.4 가구조사에서 최고 소득의 측정방법 개선
 - Taking better account of top incomes when measuring inequality levels and trends(런던경제대학)
 - What Do Household Surveys Suggest About The TOP 1% Incomes And Inequality In OECD Countries?(OECD)

○ 회의일정

Day one: 18 February 2016	
1. Welcome and work plan	
9.30-9.40	1.1 환영사(의장)
9.40-9.50	1.2 회의목적 및 개요 설명
2. Data-related issues 자료관련 이슈	
9.50-11.10	2.1 비교가능성 문제에 대한 최근 사례-캐나다를 중심으로 - 무응답 가구와 항목의 대체 방법 - 점차 낮아지는 단위 무응답과 선택된 응답자들을 위한 수집방법 - 다른 자료를 이용한 조정 : 행정자료, 소득세자료, SNA
11.30-12.45	2.2 IDD 데이터 이슈 : 사후 비교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 Top-coding과 bottom-coding 사용 - 마이너스 소득 요소의 처리 - 불규칙한 이전, 일시적인 송금, 불규칙한 양의 규칙적인 송금의 처리 - 메타데이터 : 얼마나 상세하게? 비교를 돕기 위한 최선의 방법?
14.00-15.00	2.3 Wave6에서 Wave7로 변경됨에 따라 발생한 특별한 이슈 - Wave6에서 Wave7로 변경됨에 따른 전체적인 영향 -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한 상품의 추정값이 포함되어 미치는 영향 - 좀 더 긴 시계열로 연장하여 반영하는 방법 - 이전소득의 새로운 구분 : 공적인, 직장의, 개별적인 연금의 분류
3. Timeliness 시의성	
15.00-16.00	3.1 소득분배와 빈곤의 적절한 생산 시기
4. Methodological issues 방법론적 이슈	
16.30-17.30	4.1 OECD 회원국의 가구조사에서 의제주거소득과 사회적현물이전의 측정현황 *각국에서 사전에 제출한 설문지 작성결과
17.30-17.45	4.2 EU 국가의 소득분배에서 사회적현물이전(STIK) 영향
Day two: 19 February 2016	
4. Methodological issues	
10.00-11.00	4.3 가구조사자료와 국민계정자료의 결합
11.00-12.00	4.4 가구조사에서 최고 소득의 측정방법 개선
5. Next steps & conclusions	
12.30-13.00	5.1 결론 및 향후 진행상황에 대한 논의

4. 주요 의제별 요약 및 시사점

○ 주요 의제

<데이터 관련 이슈>

2.2 IDD 데이터 이슈 : 사후 비교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자료 생산과 보급과정에서 다른 방법의 **Top-coding**과 **Bottom-coding** 처리는 데이터 전체적으로 **명백한 오류가 아니라면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음

-소득 요소별 마이너스인 경우 '0'으로 변경하는 처리는 모든 국가에서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마이너스인 처분가능소득이 허용됨에 따라 **처분가능소득이 마이너스인 경우 '0'이 되도록 경상이전지출 비율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

-**OECD ICW framework**에서는 규칙적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가구의 소비를 지원한다면 가구간의 이전에 모두 포함시키지만, IDD에서는 오직 **경상적인/규칙적인 현금(또는 준 현금) 이전만 가구간 이전으로 분류**

-**메타데이터**는 비교가능한 데이터를 평가하고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TOR과의 차이를 허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계산을 하기위한 정의와 가정을 포함해 작성해야 함

-**(시사점)**국가별 IDD 작성 현황을 참고하여 우리 현실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소득분배지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함

2.3 소득정의 변경('13.10.)에 따라 발생한 이슈 3가지(wave6 ⇒ wave7)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한 상품으로부터의 소득(OC)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였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처분가능소득의 3%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가구간 경상적인 이전지출을 포함(TRPOT)**하는 것으로 변경됨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이전소득의 새로운 구분 : **고용관련 사회수혜(퇴직연금)를 경상이 전수입으로 포함**시켰으며,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여 작성해야 함 (EU-SILC에서는 관련 자료가 없으며, 우리의 경우 퇴직연금 제도 도입기간이 짧아 별도 항목으로 분리생산을 어려움)

-Wave6과 Wave7 두 개의 연도별 데이터를 생산하는 국가는 캐나다, 핀란드, 영국과 12개 EU-SILC 국가로 나타났으며, 적어도 **2005년 자료부터는 Wave7 기준으로 과거자료를 소급**하여 줄 것을 요청함

-(**시사점**)현재 우리는 Wave6 기준으로 IDD를 작성·제공하고 있으나, '19년 이후 소득분배지표 개선 시 Wave6와 Wave7 두 기준 모두의 지표가 생산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함

<방법론적인 이슈>

4.1 가구조사에서 의제주거소득(IR)과 사회적현물이전(STIK)의 측정현황

-의제주거소득(IR)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측정되고 있으며, 가구소득에서 STiK 추정은 덜 일반적임

-불평등과 빈곤에서 의제주거소득(IR)의 영향력은 중요하며, STiK는 더 큰 영향력이 있음

-국가들의 경험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여 조만간 OECD 통계연구 책자로 발간 예정임

-(**시사점**)의제주거소득(IR)과 사회적현물이전(STIK)의 국가별 측정현황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가구의 경제적 후생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점과 이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 개발(OECD, EUROSTAT, 캔버라그룹, ILO 등)을 연구 중에 있으므로 향후 국가간 비교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함

4.2 EU 국가의 소득분배에서 사회적현물이전(STIK) 영향(EUROSTAT)

-금전적인 소득과 STiK의 분포는 적절하면서도 이해 가능한 결과를 나타냄 특히 **5분위별 금전적 소득 위에 나타난 STiK의 분포는 금전적 처분가능소득에 비해 전체 소득(금전적 소득 + STiK)이 분배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기 위한 직관적이면서도 명료한 측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5분위별 경계값을 기준으로 총 소득(금전적 소득 + STiK)의 분포는 더욱 복잡하면서도 균등화 지수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적인 해결책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불평등 분석에서 추가적인 측면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좀 더 조사되어야 함

-금전적 소득에 STiK를 추가하기 때문에 전체 소득의 하락비율로 간주하여 빈곤의 밖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일부를 설명하기 어려워 짐. 따라서 빈곤분석에서는 전체소득(금전소득 + STiK)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시사점**)Eurostat의 **2008년 STIK 연구결과와 2016년 EU-SILC 특성항목을 참고하여 수급현황을 파악**해 보는 등의 준비가 필요함. Eurostat은 EU-SILC를 통해 국가 비교를 위한 측정 표준안을 오랜 기간 연구 중에 있으므로 IDD에서도 일정부분은 채택할 것으로 판단

5. 주요 의제별 상세내용

<2.2 IDD¹⁾ 데이터 이슈 : 사후 비교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Data issues that can potentially affect ex-post comparability in IDD

1. IDD에서 사후 비교가능성에 잠재적인 영향을 주는 데이터 이슈

가. 자료 생산과 보급과정에서 다른 방법의 Top-coding과 bottom-coding 처리

나. 자료 생산과 보급과정에서 다른 방법의 마이너스 소득의 처리

다. 불규칙한 양의 이전(주거나 받는)을 경상적인 이전소득으로 처리

라. 사후 비교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설명자료의 특성

2. 다른 방법의 Top-coding과 bottom-coding 사용 : 원본 데이터에서 통계 담당자 또는 사용자에 의해

가. 정의 : 데이터 내검에 의한 상한/하한 경계에 따른 올림 또는 내림 처리

나. 사유 : 잘못된 이상치의 수정, 개인정보보호(Top-coding)

다. 왜 이슈가 되나? 소득 분포에서 양쪽 끝(꼬리)의 변경은 불평등과 빈곤의 측정에 영향을 줌

라. TOR²⁾에서는 : 데이터 전체적으로 명백한 오류가 아니라면, Top/Bottom coding을 하지 않음

Top and bottom coding

OECD indicators should be computed based on micro-data that are not top or bottom coded. However, any obvious data-entry error should be eliminated.

1) IDD : Income Distribution Data

2) TOR : Terms of Reference(OECD 요청서)

마. 실제로는

- Top-coding : 네덜란드는 백만유로, 미국은 소득요소별로 백만달러, 포르투갈, 스로베니아는 소득의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 터키는 대체방법을 사용
- Bottom coding : 네덜란드는 마이너스 백만유로, 터키는 대체방법, 포르투갈은 처분가능소득의 중위 1%, 일본은 지니 계수를 위한 표본오차에 제한을 둠
- 정보없음 : 벨기에, 스페인, 에스토니아, 그리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Eurostat

바. 토론이 필요한 사항

- 국가 및 국제(LIS³⁾) 사례
- 국가별 비교를 위한 다른 검토 방법의 특징
- 비교가능성 개선을 위한 제안

3. 자료 생산과 보급과정에서 다른 방법의 마이너스 소득의 처리 : 원본 데이터에서 통계 담당자 또는 사용자에 의해

가. 이슈 : 시장소득의 개별 요소(가구주 근로소득, 배우자 근로소득, 기타 가구원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는 균등화 후에 마이너스 될 수 있음

나. TOR에서는

- 균등화 이후에, 가구주 근로소득, 배우자 근로소득, 기타가구원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의 시장소득의 개별 요소가 마이너스 값이면 0으로 변경함
- 비영리 단체나 다른 가구에 준 이전지출(TRPOT)이 마이너스 값이면 유지함

Treatment of negative income

Once the equivalent household member adjustments are done, using the equivalence elasticity under consideration, the individual components of market income EH, ES, EO, KI, SEI, TRRSS, TRRER, TRROT showing negative values should be set to zero. For instance, any negative value of self-employment income should be set equal to zero before computing the income of each household. Conversely, transfers paid to non-profit institutions and other households should be retained even in the case of negative values.

3) LIS : Luxembourg Income Study(룩셈부르크 소득연구)는 1983년에 설립되어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등 각 국 통계청, 관련 연구기관 및 OECD 등 45개 회원기관의 참여 및 연회비로 운영되는 민간비영리 연구단체

다. **관련** : 마이너스인 처분가능소득이 허용됨

라. **IDD TOR의 가능한 개정**

[1] **Equivalent disposable income:**
 $DI_{ij} = E_{ij} + KI_{ij} + SEI_{ij} + TRR_{ij} - TRP_{ij} =$
 $= (EH_{ij} + ES_{ij} + EO_{ij}) + KI_{ij} + (SE_{ij} + OC_{ij}) + (TRRSS_{ij} + TRRER_{ij} + TRROT_{ij}) - (TA_{ij} + TRPER_{ij} + TRPOT_{ij})$

1. **E**: employee income, including wages and salaries, cash bonuses and gratuities, commissions and tips, directors' fees, profit sharing bonuses and other forms of profit-related pay, shares offered as part of employee remuneration, free and subsidised goods and services from an employer, severance and termination pay.¹ Sick pay paid by social security should also be included.
2. **KI**²: capital and property income, including income from financial assets (net of expenses), income from non-financial assets (net of expenses) and royalties. Regular receipts from voluntary individual private pension plans and life insurance schemes should also be included in this income component.
3. **SEI**³: income from self-employment, including profits and losses from unincorporated enterprises, as well as goods produced for own consumption (net of the costs of inputs). [The inclusion of this latter variable aims to adjust the OECD income concept to the realities of middle-income countries (such as Brazil, South Africa and others), where subsistence agriculture represents a significant income source for people at the bottom of the distribution. Countries that do not collect information on this income item should indicate so in the metadata sheet of the OECD questionnaire].
4. **TRR**: current transfers received, including transfers from social security (including accident and disability benefits, old-age cash benefits, unemployment benefits, maternity allowances, child and/or family allowances, all income-tested and means-tested benefits that are part of social assistance, including quasi-cash transfers given for a specific purpose (e.g food stamps)), transfers from employment related social insurance, as well as cash transfers from both non-profit institutions and other households
5. **TRP**: current transfers paid, including direct taxes on income and wealth,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paid by households, contributions to employment-related social insurance, current transfers paid to both other households and non-profit institutions. [Values for transfers paid should be reported in the OECD questionnaire with a negative sign].

- 만약 TRP(경상이전지출) > sum(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 S1,
 - 경상이전지출은 S1과 동일
- 조정된 TRPOT, TRPER, TA : $TRP' = S1$, $TRPOT' = TRPOT \times (\frac{TRP'}{TRP})$,
 $TRPER' = TRPER \times (\frac{TRP'}{TRP})$, $TA' = TA \times (\frac{TRP'}{TRP})$
- 이것은 처분가능소득이 null이 되도록 할 것임

마. 국가별 사례

- 마이너스 소득요소를 0으로 변경
 1. **TOR에 따라 반영(개별 소득요소를)** : 한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
 2. **처분가능소득** : 캐나다, 일본, 한국, 노르웨이, 터키
- 정보없음 : 헝가리, 멕시코

바. 토론이 필요한 사항

1. 국가와 국제 사례 : 제안된 개정에 대한 의견
2. 개정 결과의 특징과 국가간 비교가능성
3. 비교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

4. 불규칙한 양을 빈번하게 주거나 받는 이전

가. **이슈** : 불규칙한 양을 빈번하게 주거나 받는 이전(규칙적인 양의 불규칙한 이전) 또는 일시적인 송금

나. **왜 이슈가 되나?** 한 시점의 분배와 요약지표(평균, 불평등, 빈곤 등)의 변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을 발생시킴

다. **TOR에서는** : 오직 경상적인/규칙적인 현금(또는 준 현금) 이전만 포함

라. **OECD ICW framework⁴⁾** : 규칙적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가구간의 이전을 모두 포함시킴
 - 소비를 지원한다면 => 이전소득
 - 비현금(내구재 소비 또는 금융자산) 또는 자산 구입을 지원한다면 => 자본이전

마. **실제로는** : '규칙적인'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바. 토론이 필요한 사항

- '규칙적'인 것으로 포함하는 것은 무엇인가?

4) ICW framework : OECD Framework for Statistics on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Consumption and Wealth(가계 소득, 소비 및 부의 분포 통계를 위한 OECD 분석틀)

- 국가와 국제기구의 경험은? 국가간 비교에 미치는 영향
- 비교 가능성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5. 사후 비교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 상세한 수준, 추가적인 정보

- 가. 이슈 : 메타데이터는 비교가능한 데이터를 평가하고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임
- 나. 메타데이터는 TOR로부터 특정한 차이를 허용하기 위한 공간이며, 계산을 실행하기 위한 정의와 가정을 포함
- 다. TOR에서는 : wave7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 2005년 고정 빈곤선의 값
 - CPI는 실질 소득을 위해 사용
 - 1인당 평균 처분가능소득(균등화 하지 않은, 경상가격으로)
 - 지니계수를 위한 표본오차 정보(사용하는 방법, 표본설계에 따라 고려되는 특징)

III. ADDITIONAL INFORMATION		
Value of 2005 anchored poverty line (in annual national currency and current prices)	7,993,772	Value of 2006 anchored poverty line(unit:won)
CPI used for deflating incomes	Yes	124(2006=100)
Per capita mean disposable income (non-equivalised, in nominal current prices)	38,067,120	Per household disposable income(non-equivalised, unit:won)
Information on standard errors for Gini coefficients (methods used, features of sampling design considered)	Yes	Bootstrap method

- 라. 2015/16 data collection은 2011 캔버라 개념 정의를 잘 준수하는지 국 가별 자료를 평가하기 위한 'canberra table'이 포함되어 있음
- 마. 토론이 필요한 사항
 - 세부적으로 충분한 수준인가? 좀 더 필요한 세부사항이 있는가? 기술적인 이슈, 가정과 정의 등
 - 자료의 비교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

<2.3 Wave6에서 Wave7로 변경됨에 따라 발생한 특별한 이슈>

1. Wave6에서 Wave7로 변경된 주요 3가지 사항

- 가.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한 상품으로부터의 소득 포함(OC)
- 나. 가구간 경상적인 이진지출을 포함(TRPOT)
- 다. 경상이전소득의 새로운 구분
 $(TRR = TRRSS + TRRER + TRROT)$
 (경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고용관련 사회보험(퇴직연금) + 사적이전소득)

2. 자가소비를 위한 상품으로부터의 소득 포함(OC⁵)

- 가. 새로운 소득 요소 : 자영업의 요소로 자가소비를 위한 상품으로부터의 가치

value of goods produced for own consumption
as an element of self-employment

[1] Equivalised disposable income:
 $DI_{it} = E_{it} + KI_{it} + SE_{it} + TRR_{it} - TRP_{it} =$
 $= (EH_{it} + ES_{it} + EO_{it}) + KI_{it} + (SE_{it} + OC_{it}) + (TRRSS_{it} + TRRER_{it} + TRROT_{it}) - (TA_{it} + TRPER_{it} + TRPOT_{it})$

<Wave6>

[1] Equivalised disposable income: $DI_{it} = EH_{it} + ES_{it} + EO_{it} + K_{it} + SE_{it} + TR_{it} - TA_{it}$
 [2] Equivalised market income: $M_{it} = EH_{it} + ES_{it} + EO_{it} + K_{it} + SE_{it}$

- 나. 34개 OECD 국가 중 16개 국가에서 일부 OC에 대한 보고
 - 적은 비중 : 오스트리아, 스페인,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터키
 - 처분가능소득의 1~3% : 체코,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 처분가능소득의 5% 이상 : 멕시코

- 다. 65세이상 에서는 하위 10%에 있는 OC가 높은 비중을 나타냄

5) OC : income from goods produced for own consumption

3. 가구간 경상적인 이전지출을 포함(TRPOT)

가. 새로운 소득 요소 : 비영리단체 또는 다른 가구에 주는 경상적인 이전 (이혼수당, 생활비 등)

current transfers paid by households to non-profit institutions and other households, e.g. alimonies.

$$DI_{it} = E_{it} + KI_{it} + SEI_{it} + TRR_{it} - TRP_{it} = (EH_{it} + ES_{it} + EO_{it}) + KI_{it} + (SE_{it} + OC_{it}) + (TRRSS_{it} + TRRER_{it} + TRROT_{it}) - (TA_{it} + TRPER_{it} + TRPOT_{it})$$

나. TRPOT를 포함하지 않는 4개 국가 : 칠레, 일본, 뉴질랜드, 스웨덴

다. 처분가능소득의 1.5% 이상 : 호주, 그리스, 이스라엘, 터키, 스위스
 - 이스라엘은 하위 10%에서 매우 높은 평균 수준을 나타냄
 - 그리스는 상위 10%에서 매우 높은 평균 수준을 나타냄
 => TRPOT의 높은 수준은 소득 수준을 감소시킴

4. 이전소득의 새로운 구분 : 공적인, 직장외, 개별적인 연금의 분류

가. 이전으로 받는 좀 더 자세한 상세내역

[1] Equivalised disposable income:
 $DI_{it} = E_{it} + KI_{it} + SEI_{it} + TRR_{it} - TRP_{it} = (EH_{it} + ES_{it} + EO_{it}) + KI_{it} + (SE_{it} + OC_{it}) + (TRRSS_{it} + TRRER_{it} + TRROT_{it}) - (TA_{it} + TRPER_{it} + TRPOT_{it})$

- TRRSS**: current transfers received from public social security.
- TRRER**: current transfers received from employment-related social insurance schemes (e.g. occupational pensions), where such schemes meet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i) participation is obligatory; ii) the scheme is collective; and ii) the employer makes a contribution on behalf of an employee.
- TRROT**: current transfers received from non-profit institutions and other private households, e.g. alimonies.

KI: capital and property income, including income from financial assets (net of expenses), income from non-financial assets (net of expenses) and royalties.
 Regular receipts from voluntary individual private pension plans and life insurance schemes should also be included in this income component.

나. TRRER을 EU-SILC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다. TRRSS, TRRER, KI : 국가별 연금 제도의 분류에 따라 다름

5. Wave6과 Wave7은 어떻게 비교하는가?

가. W6과 W7 두 개의 연도별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

- 캐나다 2006-2011, 핀란드 1987-2013, 영국 2002-2010
- 12개 EU-SILC 국가 2004-2012, 오스트리아 2007-2012, 스페인 2009-2012
- 한 개 연도
 - 2011 : 칠레,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터키
 - 2012 : 호주, 헝가리,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2010),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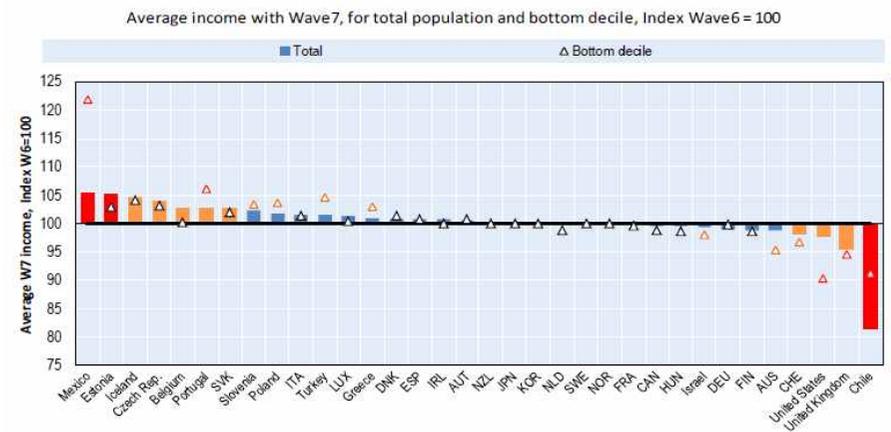
나. 다음을 제외한 국가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동일하였음

- 벨기에, 체코,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영국 : W7>W6(1.5 지니계수 차이)
-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 W6>W7(1.5 지니계수 차이)
- 칠레, 멕시코 : W7<W6(2 지니계수 차이)

다. 다음을 제외한 국가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동일하였음

-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미국 : W7>W6(1.5 지니계수 차이)
-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 W7<W6(1.5 지니계수 차이)
- 칠레, 네덜란드, 노르웨이, 터키 : W7<W6(2에서 4 지니계수 차이)

라. Wave7 평균 소득, 전체 인구와 하위 10%에서, Wave6=100



- 마. 이런 차이는 계산할 때 특별한 문제가 됨
 - 지니계수와 소득에서 추세와 변화(at bottom/top)
 - 재분배의 효과(지니계수M - 지니계수 D)/지니계수M
- 바. Wave7을 사용한 좀 더 긴 시계열로 연장하여 반영하는 방법? (적어도 2005년부터)
- 사. TRRSS와 TRRER의 좀 더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방법
- 아. Should we breakout "individual private pensions" within « Capital and property income » (Ki) ?

<4.1 의제주거소득(IR6)과 사회적현물이전(STIK) 측정방법>

1. OECD 국가별 설문 결과

가. 설문 구성

- A파트 : 의제주거소득(IR) 20개 질문
- B파트 : 사회적현물이전(STIK) 17개 질문

○ PART A : 귀속 임대료 가치 추정(의제주거소득)

- 20개 항목
- OECD IDD에 제공하는 조사 및 다른 조사에 반영여부
- (반영하는 경우) 최신자료 연도, 측정주기, 활용상태(공표여부 등), 주택의 점유 형태, 주요거주여부, 추정에 사용된 방법 및 사용이유, 반영하고 있는 하위구성 요소(주요거주지의 가치, 주택수선비, 모기지이자상환, 감가상각 등), 사용자비용 접근법인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종류, IDD에 사용된 자료, 공식지표에 반영여부 및 보조지표 활용여부, 처분가능소득(현금)과 의제주거소득이 반영된 소득의 규모 차이(최근자료 기준), SNA 자료와 비교가능한 방법과 차이에 대한 설명, 소득분배와 빈곤지표에 주는 영향, 의제주거소득 추정에 대한 참조(웹사이트, 논문, 문서 등)
- (반영하지 않는 경우) 반영계획, 통계청 이외 기관에서 귀속 임대료 가치 추정 여부

○ PART B : 사회적현물이전(STIK)

- 17개 항목
- 소득분배 연구 목적 등으로 사회적현물이전 추정여부
- (추정하는 경우) 최신자료 연도, 측정주기, 활용상태, 추정에 고려된 종류, 추정하는 기관의 유형, 7개 분야별 평균 생산 및 공급비용, 7개 분야별 실제소비접근법(actual consumption approach) 및 보험가액 접근법(insurance value approach), 7개 분야별 가구단위 및 개인단위 여부, 추정에 사용되는 데이터, 공식지표에 반영여부, 처분가능소득(현금)과 STIK가 반영된 소득의 규모 차이(최근자료 기준), SNA 자료와 비교가능한 방법과 차이에 대한 설명, 소득분배와 빈곤지표에 주는 영향, 의제주거소득 추정에 대한 참조(웹사이트, 논문, 문서 등)
- (추정하지 않는 경우) 반영계획, 통계청 이외 기관에서 귀속 임대료 가치 추정 여부

6) IR : Imputed Rent

나. 설문 목표

- 개념과 측정방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 국가별 경험을 검토
- 소득 불평등과 빈곤 측정에서 IR과 STiK의 영향을 평가

다. 응답국가

- 전체 : 26개국
- OECD 25개 국가 + 라트비아 공화국
- IR에는 4개 국가(아이슬란드,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의 EU-SILC 품질보고서에 있는 정보를 포함하였음

2. 의제주거소득(IR) 설문 결과

<참고-의제주거소득 반영방법>

가. 캔버라그룹(2011)

- 자가주택의 주택서비스 : 서비스의 귀속가치 - 발생한 주거비의 가치
(ex: 시장 의제주거소득에서 주택소유주로서 내는 이자비용, 중간투입비용(재산세, 수리 및 유지비, 보험료 등) 등의 비용을 제한 값)
- 1. 집세상당액법(rental equivalence : 시장임대료) : 시장 임대가격에서 주거비를 제한 값이 귀속소득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방법
-단점 : 임대주택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자료의 출처나 접근법에 따라 추정치가 달라질 수 있음
- 2. 사용자비용 접근법(user cost : 자본환원) : 주택소유자는 다른 금융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포기하고 주택을 선택한 것이라 가정하는 방법
(ex: (해당 주택 가격 - 대출저당비용) * 이자율(민간시장 수익률))
-단점 : 해당 주택의 가격과 대출저당비용 정보가 있어야 함

나. 가계동향조사

- 의제주거소득 계산방법 : ①집세상당액법(rental equivalence)
* 의제이자소득은 ②사용자비용 접근법을 사용(보증금에 대한 대출이 비교적 제한적(소규모)이기 때문에 0으로 가정하고 계산한 것으로 판단됨)

가. 측정하지 않는 국가 : 캐나다, 한국

나. 추정의 주기 : 24개국 모두 정기적으로 추정

- 매년 : 20개국 및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 격년 : 호주, 멕시코
- 5년마다 : 일본

다. 최근 측정연도 : 2013년과 2014년

라. 추정값의 활용현황(23개 국가)

- 공식통계로 공표 : 11개 국가
- 통계 간행물에 포함 : 5개 국가
- 연구결과로만 발간 : 3개 국가(룩셈부르크, 스웨덴, 라트비아)
- 마이크로데이터로만 이용가능 : 4개 국가

마. 소득분배지표(IDD)와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국가 : 19개 국가

사. 주택의 점유형태

- 자가소유와 임차가구(시장가격보다 낮은 임차료 또는 무상) 모두 추정 : 24개국 중 17개 국가와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 자가소유와 무상 임차가구(시장가격보다 낮은 임차는 제외)인 경우 추정 : 슬로바키아
- 자가소유인 경우만 추정 : 6개 국가
- 주요 거주지만 추정 : 24개 국가 중 22개 국가(덴마크는 제2의 거주지를 포함, 네덜란드는 해외의 두 번째 거주지를 포함)

아. 다양한 접근과 측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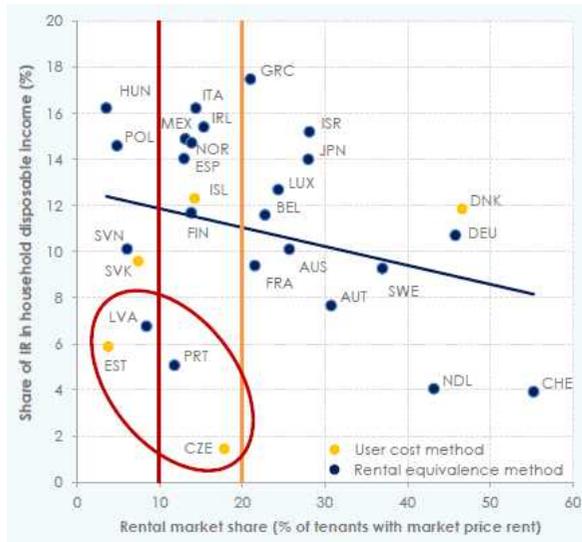
- rental equivalence approach(시장임대료 접근법) : 24개 국가 중 20개 국가와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 user cost approach(사용자 비용 접근법) : 4개 국가(덴마크, 슬로바키아, 체코,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 시장임대료 접근법의 다양한 방법
 - stratification method(층화방법) : 7개 국가
 - hedonic regression(헤도닉 회귀방법) : 4개 국가(프랑스, 독일, 일본,

라트비아 공화국)

- linear regression method(선형회귀방법) : 2개 국가(오스트리아, 네덜란드, + 폴란드, 포르투갈)
- combination of different approaches(다른 접근법의 결합) : 3개 국가(스페인, 그리스, 헝가리)
- subjective method(주관적인 평가 방법) : 1개 국가 : 멕시코

자. 가구 처분가능소득에서 귀속임차료(IR)의 비중과 임대시장 점유율 비교

- 임대시장 점유율과 추정방법
 - 임대시장 점유율 10% 이하
 -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 사용자비용 접근법
 - 폴란드, 라트비아 공화국 : 회귀법
 - 슬로베니아 : 계층화 방법
 - 헝가리 : 회귀법과 주관적인 평가방법
 - 임대시장 점유율 10~20% 이하
 - 아이슬란드, 체코 : 사용자비용 접근법
 - 핀란드, 노르웨이, 아일랜드는 계층화 방법
 - 포르투갈, 이탈리아 : 회귀법
 - 스페인 : 계층화 방법과 주관적인 평가방법
 - 멕시코 : 주관적인 평가방법



- 임대시장 점유율 20% 초과
 - 덴마크 : 사용자비용 접근법
 -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스웨덴 : 계층화 방법
 - 8개 국가 : 회귀법
 - 그리스 : 계층화 방법과 주관적인 평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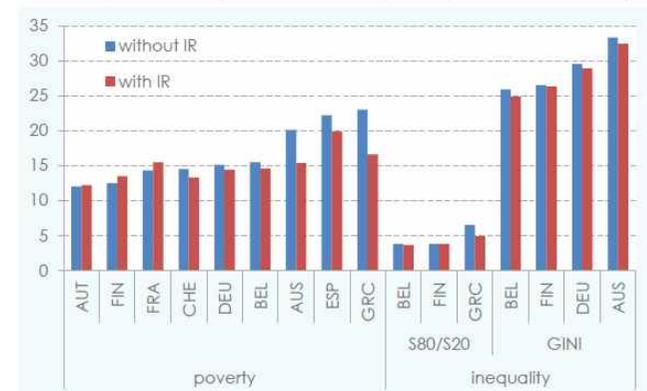
차. 향후 계획

- 당분간 접근방법에 대한 변경 계획 없음 : 18개 국가
 - 현재 접근법이 만족스런 결과를 줌
 -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핀란드
 - 시계열 단절을 피하기 위해서 : 스웨덴
- 접근방법 변경을 고려하고 있음 : 4개 국가(그리스, 일본, 라트비아 공화국, 슬로바키아)
- 노르웨이는 인구총조사와 같은 가구소득통계에 의제주거비를 포함 할 계획임(OECD 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하는 자료) : 사용자비용 접근법이 시장임대료 접근법에 비해 좀 더 적절한 것으로 간주함
- 캐나다와 한국은 현재 의제주거소득을 계산하고 있지 않으며, 가까운 미래에 반영할 계획 또한 없음

카. 빈곤과 소득불평등에 주는 영향

- 국가의 기준 소득에 반영하고 있는 국가 : 24개 국가 중 12개 국가
- 국가의 주요 소득으로 포함 : 5개 국가
- 보조적인 성격의 소득으로 포함 : 7개 국가
- 의제주거소득(IR)가 빈곤지표를 감소시킨 국가 : 7개 국가

The impact of imputed rent on poverty and inequality



- 의제주거소득(IR)가 빈곤지표를 증가시킨 국가 : 5개 국가(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멕시코, 노르웨이)
- 의제주거소득(IR)가 소득 불평등 지표를 감소시킨 국가 : 8개 국가
- 의제주거소득(IR)가 소득 불평등 지표를 증가시킨 국가 : 1개 국가(노르웨이, 2010 유럽연합통계위원회 보고서)

3. 사회적현물이전(STIK) 설문 결과

<참고-사회적 현물이전(STIK) 정의>

1. 캔버라그룹 핸드북(2011)

2.3.5 사회적 현물이전

사회적 현물이전 (STIK)은 정부 및 비영리단체가 개인에게 무료로 또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로 정의된다. 예컨대, 사회적 현물이전에는 무료 혹은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의료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일단 개인이 의료비를 내면 이후 이 비용을 일부 또는 모두 정부가 환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STIK의 또 다른 형태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 임대료 보조금, 공공임대주택 보조 등이 있다. 달리 말해 낮은 현금가로 보조를 하건, 리베이트나 환급 등을 통해 보조를 하건, 소비수준은 개념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 요소는 모두 사회적 현물이전에 포함된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3.4.5 (b)에 논의된 이유 때문에 소득의 조작적 정의에는 제외되는 개념이다.

2.3.5 Social transfers in kind

Social transfers in kind (STIK) are defined as goods and services provided by government and non-profit institutions that benefit individuals but are provided free or at subsidised prices. For example, social transfers in kind may include medical services provided for free or at subsidised prices, including where medical expenses are initially met by individuals but are subsequently either fully or partly reimbursed by government. Other examples of STIK include government provided education, rental allowances and the subsidy element of publicly provided housing. In other words, the treatment is symmetrical, regardless of whether the subsidy is delivered as a lower initial cash price or as a rebate or refund on outlay – conceptually the consumption levels are the same and the income component is the social transfer in kind. Social transfers in kind are excluded from the operational definition of income for the reasons discussed in section 3.4.5(b).

가. 측정하는 국가 : 26개 국가 중 10개 국가(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나. 추정 주기 : 대부분 정기적으로 추정

- 매년 : 네덜란드, 스웨덴
- 격년 : 호주, 덴마크, 멕시코
- 3년마다 : 핀란드, 일본
- 부정기 : 오스트리아, 프랑스, 노르웨이

다. 최근 측정연도 : 2013년과 2014년

라. 추정값의 활용현황(10개 국가)

- 공식통계로 공표 : 4개 국가
- 통계 간행물에 포함 : 5개 국가
- 연구결과로만 발간 : 1개 국가(오스트리아)

마. 사회적현물이전(STiK) 추정에서 포함하는 혜택의 유형

- healthcare(보건) : 10개 국가
- education services(교육 서비스) : 9개 국가(일본만 제외)
- childcare(보육) : 9개 국가(멕시코만 제외)
- long-term services for the elderly(노령) : 7개 국가
- social housing(주거) : 2개 국가(호주, 프랑스)
- public transport, social services targeted towards disadvantaged individuals and culture(대중교통 보조금,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노르웨이

바. 평가 방법

- 사회적현물이전에 포함된 모든 혜택을 평균 생산비용으로 사용 : 4개 국가(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 사회적현물이전에 포함된 모든 혜택을 평균 공급비용으로 사용 : 3개 국가(호주, 일본, 노르웨이)
- 혼합방법 사용

사. 사회적현물이전(STiK)을 할당하는 방법

- 실제소비접근법(actual consumption approach, 수혜자에게 할당) : 3개 국가(덴마크, 핀란드, 멕시코)
- 보험가액접근법(insurance value approach,) :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 결합접근법 : 4개 국가

아. 사회적현물이전(STiK)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는지?

- 대부분의 국가는 개별 수혜자에게 귀속시키지만,
- 가구 전체에 귀속 : 프랑스
- 보육, 보건, 노령은 가구 전체에 귀속, 나머지 혜택은 개별 수혜자에게 귀속 : 호주
- 소득분위에 따라 귀속 : 오스트리아

자. 사회적현물이전(STiK)을 측정하지 않는 이유

- 경험과 방법론적 문제의 부족을 주된 이유로 보고함

차.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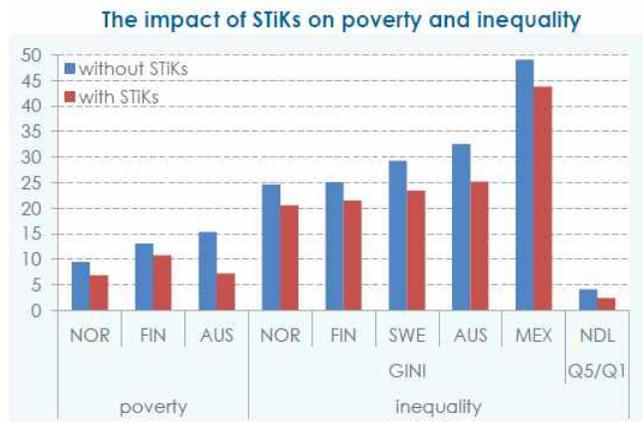
- 사회적현물이전(STiK)을 측정하지 않는 16개 국가 중 2개 국가는 측정할 계획이 있음
 - 보건, 교육서비스에 대한 일부 사회적현물이전은 측정하고 있으며 (EG-DNA를 위해에 제공하기 위해서), 향후 방법론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계획 : 이스라엘
 - 2018년 이후 추정 계획 있음 : 한국
 - 향후 사회적현물이전(STiK)을 국가나 국제수준에서 추정방법이 정해지면 사용할 계획 : 벨기에, 에스토니아

카. 국제적인 활동

- Eurostat의 2년 프로젝트(2011-2013)
- EU-SILC 2016년 특성 항목

타. 빈곤과 소득불평등에 주는 영향

- 국가의 처분가능소득에 포함하고 있는 국가 : 10개 국가 중 4개 국가 (오스트리아, 멕시코, 노르웨이, 스웨덴)
- 일반적으로 보건과 교육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에서 20%~25%의 점유율을 나타냄
 - STiK가 가구의 현금 처분가능소득 7.1%를 나타냄 : 멕시코
 - 개인단위 공공사회지출 부분에서는 44%
- STiK가 빈곤율을 감소시킨 국가 : 5개 국가(호주,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 STiK가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킨 국가 : 9개 국가(오스트리아만 제외)
- 교육에서 36.5%, 보건에서 29.6%, 주거에서 2.9% 감소시킨 국가(전체 69%) : 1개 국가(프랑스)



4. 결론 및 토론

가. 의제주거소득(IR)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측정되고 있으며, 가구소득에서 STiK 추정은 덜 일반적임

나. 불평등과 빈곤에서 의제주거소득(IR)의 영향력은 중요하며, STiK는 더 큰 영향력이 있음

다. 국가들의 경험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여 조만간 OECD 통계연구 책자로 발간 예정임

§ 임대시장 변화의 영향 : 임대료 상승, 모기지 이자비용 감소 등

§ STiK의 국제 가이드라인이 도움을 줄 수 있음

§ 비교를 위한 동적인 또는 정적인 빈곤선

§ STiK 계산시 균등화 스케일에 대한 경험

<4.2 EU 국가의 소득분배에서 사회적현물이전(STiK) 영향> - 방법론과 첫 번째 결과 : EUROSTAT F4 -

1. 개요

가. Eurostat은 EU 회원국의 금전적 및 비금전적 분배지표를 평가하기 위하여 EU-SILC⁷⁾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해 귀속 STiK 방법론을 개발하였음. 현재 정책에 사용 가능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DG EMPL과 함께 토의 중임

나. STiK의 분배에 대한 예비분석은 교육, 보건, 보육 서비스로 제한되며, 2008년에 분석하였음

다. 개인화된 STiK는 가정들을 요구하며 대체 기법을 기반으로 함. 2016년 EU-SILC 특성항목은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잠재적인 변수들을 추가하였음

라. 접근방법은 금전적인 측면에서 STiK를 평가하고 금전소득과 함께 반영함

마. 이 연구는 가구가 지불하는 간접세는 포함하지 않음. 또한 결합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소득, 소비, 부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보다 잘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Eurostat 프로젝트가 진행중에 있음. STiK의 분석을 개선하기 위해 가까운 미래에 사용될 것으로 결과를 예상하고 있음

바. 방법론은 STiK가 금전적인 소득 상태와 관계없이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일하게 부여된다는 가정에 근거함. 이 가정은 보편적이며, 데이터의 이용가능성이 제한됨

7) EU-SILC : 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유럽연합-주거상태와 소득에 대한 통계)

2.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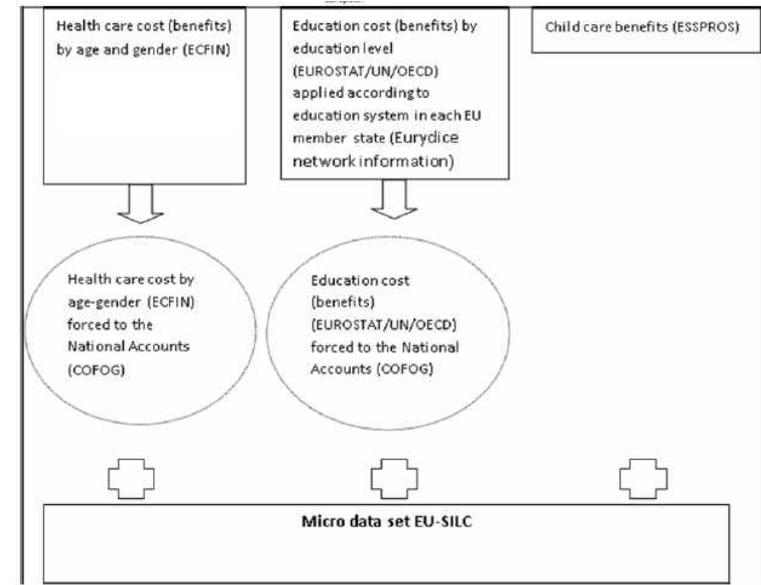
- 가. 보건 STiK는 보험가액 접근법을 선택했으며, 교육과 보육 STiK는 소비 접근법을 선택하였음
- 나. 보건(Health) : 성별과 연령에 따른 보건 STiK를 할당하는 방법에 기초함
- 다. 교육(Education) : 교육 STiK는 연령과 교육관련 변수를 사용
- 라. 보육(Child care) : 보육 STiK는 보육서비스 변수의 실제 소비를 사용
- 마. 2016년 EU-SILC 특성항목으로부터 좀 더 정확하게 STiK 할당 예정
- 바. 가구와 개인 수준에서 STiK 결과
 - NET-SILC2 and Euromod 연구에서 사용되는 균등화지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음(EU-SILC에서 주로 사용하는 OECD 수정 균등화지수⁸⁾가 아님)

NET-SILC2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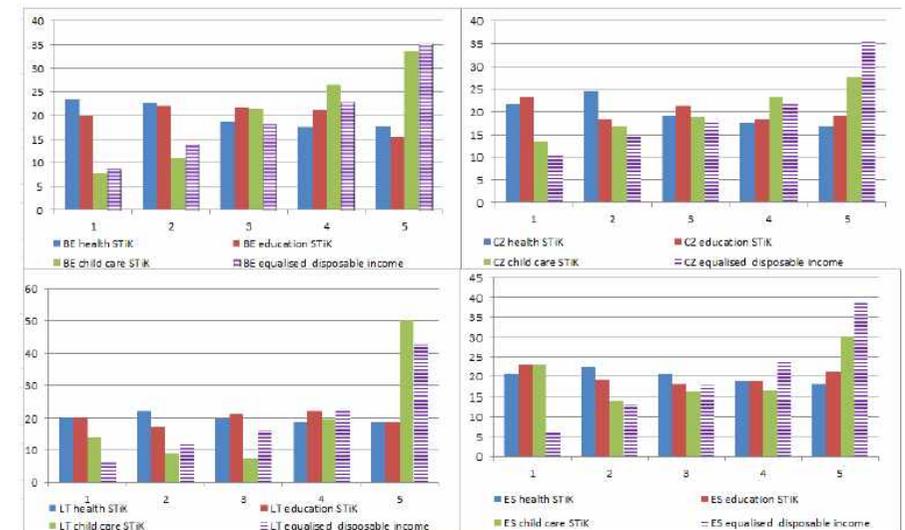
Constant	0.46
0-3	0.41
3 years to education age	0.57
Education age below 14	0.69
Education age above 13	0.95
Above education age - 54	0.54
55-64	0.6
65-74	0.67
75 and above	0.75

8) OECD 수정 균등화지수 : 가구주에게 1, 그 외 성인가구원은 0.5, 아동가구원은 0.3을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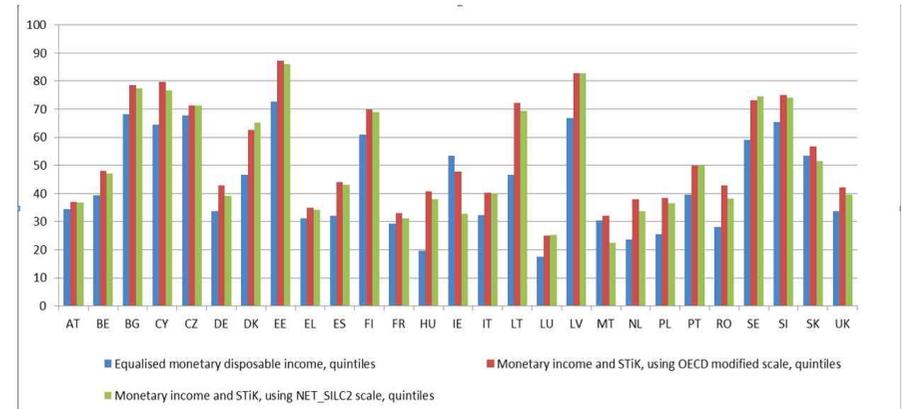
사. 사용되는 데이터



아. 결과1: 균등화 금전소득에 대한 STiK와 금전적 소득의 점유율(2008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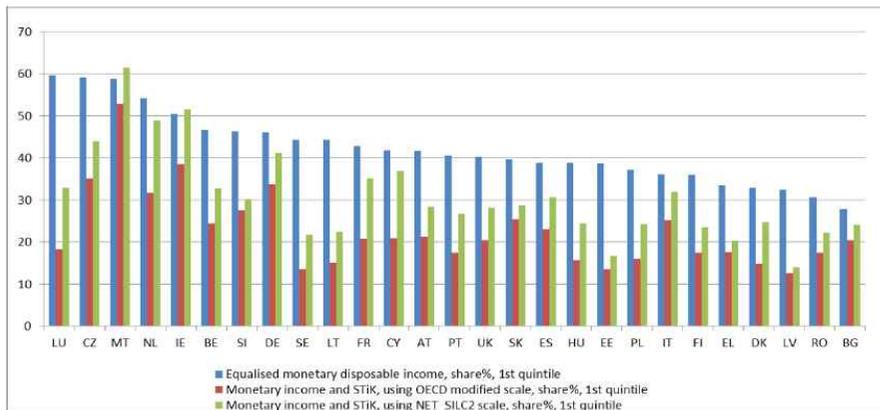


- **균등화처분가능소득 기준 1분위 점유율은 6%~10% 수준을 나타냄**
 2분위 점유율은 12%~14% 수준을 나타냄
 3분위 점유율은 16%~18% 수준을 나타냄
 4분위 점유율은 22%~24% 수준을 나타냄
 5분위 점유율은 35%~42% 수준을 나타냄
- 벨기에와 체코, 리투아니아, 에스토냐의 **보건 STiK**는 17%~24%, **교육 STiK**는 15%~22%로 분위별로 고르게 나타났으나,
- **보건 STiK**는 벨기에와 체코가 8%~34%로 균등화처분가능소득과 유사한 분포를 나타낸 반면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냐는 다른 분포를 나타냄
 - ※ **보건 STiK**는 실제 소비 접근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별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자. 결과2: 전체 소득(STiK + 금전적 소득)으로 균등화 한 STiK와 금전적 소득의 점유율

- 세 개의 단계별로 보여지는 각 소득의 종류별 결과



Share of single adult with dependent children population allocated in the 1st income quintile, 2008, %

Share from total population of single adults over 65 in the 1st income quintile, 2008, %

3. 2016년 EU-SILC 서비스 이용에 대한 특성항목

가. EU 위원회 규정 2015/245

- 제공하는 정보
 - 어떤 서비스가 이용되는가?
 - 서비스는 어떤 기금에서 제공하는가?
 - 채워지지 않은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가?

나. 2016년 EU-SILC 특성항목

- 육아에 대한 서비스 이용
- 정규교육과 훈련에 대한 서비스 이용
- 평생학습에 대한 서비스 이용
- 보건에 대한 서비스 이용
- 가정 의료에 대한 서비스 이용

다. 육아에 대한 서비스 이용

- 공식적인 육아서비스 비용 지불 : Y/N
- 공식적인 육아서비스 지불 비용의 비율 : 전체 / 할인된(보조받은) 가격
- 공식적인 육아서비스 비용을 누가 지출/기여 하나? : 정부, 고용주,

다른기관, 개인

- 육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여유 : 아주 쉽게 부터 매우 어려운 순으로 6단계
- 공식적인 육아서비스에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는지 : Y/N
- 공식적인 육아서비스를 활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 여유가 없어서, 장소가 없어서, 인근에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품질이 낮아서, 기타 다른 이유

라. 정규교육과 훈련에 대한 서비스 이용

- 학비 지불 : Y/N
- 수업료의 지불 : 전체 / 할인된(보조받은) 가격
- 수업료를 누가 지출/기여 하나? : 정부, 고용주, 다른기관, 개인
-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여유 : 아주 쉽게 부터 매우 어려운 순으로 6단계
- 정규 교육에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는지: Y/N
- 정규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주된 이유 : 여유가 없어서, 장소가 없어서, 인근에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품질이 낮아서, 기타 다른 이유

마. 평생학습에 대한 서비스 이용

- 취미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 : Y/N
- 전문적인 활동과 관련된 훈련에 참여 : Y/N
- 전문적인 활동과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 여유가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시간의 제약으로, 적절한 과정이 없어서, 고용주가 제공하지 않아서, 기타 다른 이유

바. 보건에 대한 서비스 이용

- 보건 서비스의 이용 : Y/N
- 보건 서비스를 위한 지불 : Y/N
-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여유 : 아주 쉽게 부터 매우 어려운 순으로 5단계

사. 가정 의료에 대한 서비스 이용

- 노년이라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오랜기간 병약거나 아프기 때문에 집으로 방문하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 : Y/N
- 전문적인 가정 의료 서비스를 받음 : Y/N

- 전문적인 가정 의료 서비스를 받는 주당 시간 : 10시간 미만, 10시간~20시간 미만, 20시간 이상 / 일주일
- 전문적인 가정의료 서비스를 위한 지불 : Y/N
- 전문적인 가정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여유 : 아주 쉽게 부터 매우 어려운 순으로 6단계
- 전문적인 가정의료 서비스에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는지 : Y/N
- 전문적인 가정의료 서비스를 받지 않는 주된 이유 : 여유가 없어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의해 거절되어서, 이용가능한 서비스가 없어서, 만족스럽지 않은 서비스의 품질 때문에, 기타 다른 이유
- 제공받은 보살핌 또는 도움 : 가구원, 비가구원, 둘다
- 보살핌 또는 도움을 제공받은 주당 시간 : 10시간 미만, 10시간~20시간 미만, 20시간 이상 / 일주일

아. 결론

- 금전적인 소득과 STiK의 분포는 적절하면서도 이해가능한 결과를 나타냄. 특히 **5분위별 금전적 소득 위에 나타난 STiK의 분포는 금전적 처분가능소득에 비해 전체 소득(금전적 소득 + STiK)이 분배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기 위한 직관적이면서도 명료한 측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5분위별 경계값을 기준으로 총 소득(금전적 소득 + STiK)의 분포는 더욱 복잡하면서도 균등화 지수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적인 해결책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불평등 분석에서 추가적인 측면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좀 더 조사되어야 함
- 금전적 소득에 STiK를 추가하기 때문에 전체 소득의 하락비율로 간주하여 **빈곤의 밖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일부를 설명하기 어려워 짐**. 따라서 **빈곤분석에서는 전체소득(금전소득 + STiK)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